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60
----------	------

2025년 6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 제안이유
  - 서울시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5.9.30.일자로 협약이 만료됨 ('22.10.1.~25.9.30.)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

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법에서 정한 보육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서울특별시 0세 전담반 교사 교육 등
  - (양육자 지원) 양육코칭센터,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상담, 공통 부모교육 지원 등
  - (보육교직원 지원)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안심 상담실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 (홍보·협력) 운영사업 홍보 및 육아관련 정보 공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사업 추진 등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4.1.)

○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 특히 부모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역세권창년주택 1층 (규모: 1,079.75㎡)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등
- 위치도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25년 위탁금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서강로 75-16	숙명여자대학교	'22.10.1.~'25.9.30	2,031백만원

(5) 민간위탁기간 : '25.10.1.~'28.9.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7)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31백만원(시비100%)

○ 산출근거

- 인건비 912백만원, 사업비 944백만원, 운영비 172백만원,  
기능보강비 3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3.7.)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2)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sup>1)</sup>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sup>2)</sup>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sup>3)</sup>의 규정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2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sup>4)</sup>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육아종합센터’와 자치구별 각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6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5	11	3	6	2	2	5	-	31	3	5	3	6	3	6	5	1

자료: 교육부(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117개소), 24.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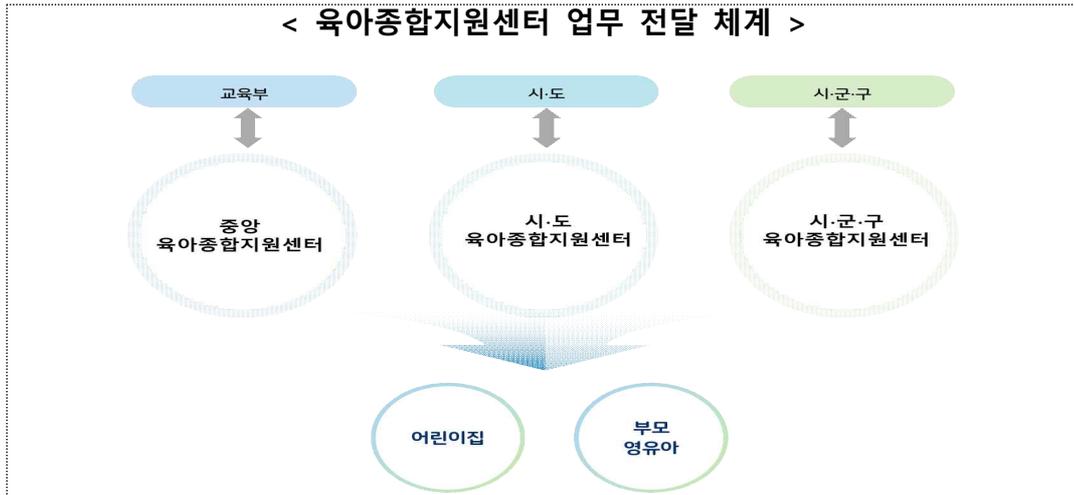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센터와 시·도, 시·군·구 지방센터 간의 전달체계를 통해 역할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앙센터와 서울시-자치구 센터는 명시적인 상하관계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지방센터가 사업 수행 주체로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조임.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sup>5)</sup>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환경 및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영유아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 중앙센터·지역센터는 **명시적인 상하관계는 아니나,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조임**



▷ **(중앙센터)** 공통 교육 개발, 양육상담, 지방센터 총괄 관리 등 수행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22.6 ~)

▷ **(지방센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 수행 등 **실제적 사업 수행 주체**

구분	주요사업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육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부모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양육정보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화 사업	가정양육, 저출산대책관련된 지역 특화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 【서울시 - 자치구 간 사업추진 체계】

서울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계획수립</li> <li>▪ 예산 지원</li> <li>▪ 사업 총괄</li> <li>▪ 사업 홍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서울시책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획 및 개발</li> <li>▪ 사업매뉴얼 및 자료개발</li> <li>▪ 설명회</li> <li>▪ 사업운영 컨설팅</li> <li>▪ 인력양성 및 관리</li> <li>▪ 소통 간담회</li> <li>▪ 사업실적관리 및 모니터링</li> <li>▪ 홍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자체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li> <li>▪ 맞춤형(취약)보육 지원사업</li> <li>▪ 온라인 중점 사업</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서울시책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방향 및 방침 숙지</li> <li>▪ 자체 계획 수립</li> <li>▪ 자체 특성 반영한 사업 운영</li> <li>▪ 사업 결과 보고</li> <li>▪ 홍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자체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사업 운영</li> </ul>

자료: 교육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명시적 행정조직상의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지원-관리 관계로 기능적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서울시는 ‘광역단위의 정책 실행과 자치구 센터에 대한 지원·조정’, 자치구는 ‘지역 단위의 보육 지원 서비스 제공과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수평적 협력 기반의 기능적 분화와 조정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센터는 1999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 민간 위탁이 추진되었고, 현 수탁법인인 ‘학교법인숙명학원’이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17년간 운영하고 있음.
- '22년부터 정부 이양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54%를 차지하나,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임.

**【최근 3년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2022	1,962,833	730,601	1,001,632	230,600
2023	2,476,310	469,250	1,344,697	173,705
2024	2,244,611	480,459	1,149,689	178,221

자료: 2022~2024년 사업별예산서\_여성가족실

- 센터 주요 사업은 ▶ 가정양육 지원사업 (부모교육, 놀이체험실 운영,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및 양육정보제공) ▶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집 컨설팅, 대체교사(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이며, 세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창전동역세권청년주택 1층(1,079.75㎡)
- 조직 : 1센터 3팀 27명(센터장1명, 보육전문요원11명, 행정원 등 15명)

### ▷ 위탁기관

- 학교법인 숙명여자대학교 (2022.10.1. ~ 2025.9.30.)

### ▷ 2025년 예산 2,030,550천원 (시비 100%)

- 인건비 : 911,848천원
- 사업비 : 943,897천원
- 관리운영비 : 172,225천원
- 기능보강비 : 2,580천원

### ▷ 2025년 주요 사업

- 어린이집 교육 및 컨설팅(보육과정 컨설팅 등)
- 양육자 지원(양육코칭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 보육교직원 지원(대체교사, 조리원 지원, 안심상담실 등)
- 홍보 · 협력 · 대관사업(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 ▷ 민간위탁 추진 연혁

- 1차 (공개경쟁) '99.10.1 ~ '02.9.30 (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재계약) '02.10.1 ~ '05.9.30 (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재계약) '05.10.1 ~ '08.9.30 (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4차 (공개경쟁) '08.10.1 ~ '11.9.30 (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5차 (공개경쟁) '11.10.1 ~ '14.9.30 (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6차 (재계약) '14.10.1 ~ '16.9.30 (2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7차 (재계약) '16.10.1 ~ '19.9.30 (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8차 (재위탁) '19.10.1 ~ '22.9.30 (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9차 (재계약) '22.10.1 ~ '25.9.30 (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제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6)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7)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보육 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sup>8)</sup>

6)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8)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심의회」 심의 결과 : “적정” (조직담당관-2385.2025.3.7)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를 살펴보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주요 결과】**

<p><b>종합점수</b></p>	<p>○ <b>85.71점</b></p>
<p><b>우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직 및 인력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팀별 월 회의운영, 서울시 신규사업수행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융통적 인력운영, 정규직 비정규직 우선 전환, 직원공백 예방을 위한 인수인계 체계구축 등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함.</li> </ul> </li> <li>○ <b>사업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PDCA기법을 활용하여 사업발전과 개선이 지속되도록 하고, 연 2회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다면평가 및 수혜자 욕구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li> </ul> </li> <li>○ <b>사업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장난감도서관 시구통합연계서비스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향상함. 신규사업 발굴 노력으로 ‘양육코칭센터’ 전문가 맞춤 코칭 사업을 진행하여 육아전문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음.</li> <li>-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리정서지원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안심상담실’ 및 ‘생체신호’ 축정을 통해 교사들의 스트레스 및 누적 피로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지원한 실적이 적절함.</li> </ul> </li> </ul>
<p><b>개선요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직 및 인력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 관리인력들은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조화와 향상되고 있음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li> <li>- 정규직 13명 규모의 크지 않은 센터에서 이직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이직자 감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이 요구됨.</li> </ul> </li> <li>○ <b>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퇴직연금, 업무추진비 초과사용, 교통카드 잔액처리) 및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사업비가 최근 3년간 축소되고 있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요구되는 바임.</li> </ul> </li> <li>○ <b>사업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장난감도서관 사업이 환경보호와 자원낭비를 줄이는 업사이클링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계량적 평가가 필요함.</li> <li>- 서울시 전역의 양육자, 영유아 대상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센터 내 우수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는 홍보 노력이 필요함.</li> </ul> </li> </ul>
<p><b>지도점검 감점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규정관리 부분에서 협약기간 내 9건 지적 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감사 지적 사항 매년 발생에 따라 준수 노력 요함</li> </ul> </li> <li>○ 협약사항 위반(-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13조제5항(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규정 위반</li> <li>- 협약서 기준 채용공고일(10일) → 14일 공고</li> </ul> </li> </ul>

- 아울러 동일 기관에 대해 장기수탁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수탁기관의 운영방식이나 조직체계가 굳어지고, 서비스 혁신 개선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보육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따라서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제안요청서 및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탁기관이 참여하도록 신규 진입 장벽 완화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임.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의 해당 사무는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로서 타당함.
- 다만, 동일 기관에서 장기수탁이 계속됨에 따라 변화되는 보육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과 개선이 요구되는 바임. 이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효율성과 보육 서비스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한송희	02-2180-814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60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5.9.30.일자로 협약이 만료됨 ('22.10.1.~'25.9.30.)
- 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다. 법에서 정한 보육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 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서울특별시 0세 전담반 교사 교육 등
- (양육자 지원) 양육코칭센터,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상담, 공통 부모교육 지원 등
- (보육교직원 지원)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 (홍보·협력) 운영사업 홍보 및 육아관련 정보 공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사업 추진 등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4.1.)

#####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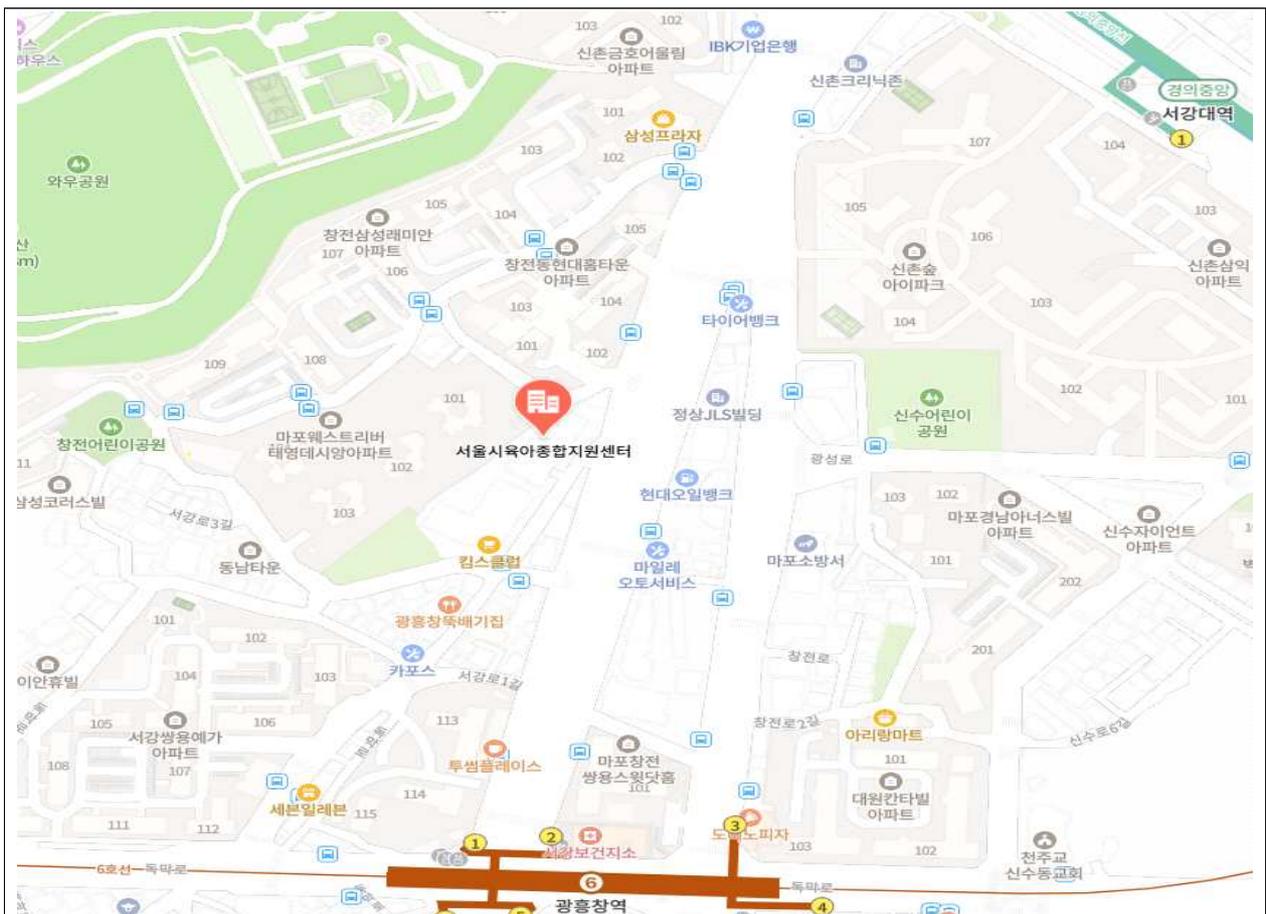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 특히 부모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역세권청년주택 1층  
(규모 : 1,079.75㎡)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등
- 위치도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25년 위탁금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서강로 75-16	숙명여자대학교	' 22.10.1.~' 25.9.30.	2,031백만원

마. 민간위탁기간 : '25.10.1.~'28.9.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31백만원(시비100%)

○ 산출근거

- 인건비 912백만원, 사업비 944백만원, 운영비 172백만원,  
기능보강비 3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3.7.)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이성민 (☎2133-5093)